

# ITU-2000 작업그룹 최종 권고안 마련

이 홍 립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파견

주변 전기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ITU의 회원제도, 재정운영, 작업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온 ITU-2000 그룹이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 6월 개최된 이사회에 작업 최종결과를 제출하였다. ITU-2000 그룹의 권고안은 총 2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8 ITU 전권위원회에 보고되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금번 이사회에서는 다수 개도국 정부대표들이 ITU-2000 그룹의 권고안에 대해 작업과정에서 자신들의 참여가 충분치 못했던 점과 권고안이 자신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검토기간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권고안의 이사회 승인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이사회에서는 회원국들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고 이사회 결정으로 즉시 실행에 옮겨질 성격의 권고안 11개만을 채택하고(이중 몇몇 권고안은 일부만 채택함) 나머지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ITU 헌장/협약 개정안을 첨부하여 전권위원회에서 검토기로 결정하였다.

## 1. 작업 진행경과와 주요 쟁점사항

ITU-2000 그룹은 '94 교토 전권위원회 결의 15와 39에 의거 ITU의 회원제도(회원의 권리와 의무) 개선방안과 재정 강화방안에 대해 각기 검토해온 2개 그룹의 작업을 통합, '96년 6월 ITU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이 결정되었으며<sup>1)</sup>,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97 이사회에서 검토토록 '98 전권위원회에 보고할 정부 및 민간회원의 권리와 의무, ITU의 재정기반 강화, 그리고 이에 따르는 ITU의 구조 개편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
- 이와 관련한 ITU 헌장 및 협약 개정에 관한 초안

1) ITU-2000그룹의 구성배경에 대해서는 TTA저널 96년 12월호에 게재된 원고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ITU-2000 Working Group 1차회의 결과 및 향후방향', 이홍립, 유응근.



이에 따라 ITU-2000 그룹은 모로코의 Mr. Berrada를 의장으로 산하에 6개의 실무 작업그룹을 구성하였으며<sup>2)</sup>, 각국 정부 및 민간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가운데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제네바의 ITU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ITU가 교토 전권위원회 결의를 통해 ITU의 회원제도(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를 사무총장에게 지시하게 된 것은 최근의 급속히 변화하는 전기통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ITU도 과거의 운영방식과 체제에서 탈피하여 통신사업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과 표준의 제정을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TU-2000그룹의 작업에 있어 핵심은 현재 정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ITU의 의사결정 체제와 재정분담 방식, 그리고 근본적으로 정부간 기구로서의 운영방식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 표준개발과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민간 포럼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화 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TU-2000 그룹의 작업은 시작 초기

이러한 작업의 취지와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대부분의 ITU 회원(국가회원, 민간회원)들이 원칙적으로 찬동하는 가운데 착수되었다. 그러나 실제 개혁 권고안의 도출에 들어가서는 회원들간의 입장과 이해의 간격이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ITU-2000 그룹의 개혁권고안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회원제도 개혁

- 민간회원의 단일화
- 민간회원으로서의 가입절차 간소화
  -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입신청서 제출시 정부 승인 및 경유절차 생략
- associate 도입(특정 연구반 활동에만 부분적으로 참여) 등

○ 민간회원(Sector Member)의 권한 강화

- 재정운영에 Sector 자문그룹의 참가 허용 (Sector 및 ITU 전체 재정 운영)
- WRC(무선전파총회)에 observer로 단독 참여 허용 등

○ 예산시스템 개혁

- 민간회원 기부금의 활용
  - 민간회원(Sector member)들이 내는 기부금은 해당 Sector로 배정
- 원가에 입각한 예산편성

2) 실무 작업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본 Group 부의장 겸 해당그룹 rapporteur)  
 Group 1: ITU의 재정기반 (Mr. P.Gagne, 프랑스/ Mr. Gracie, 캐나다)  
 Group 2: 회원제도 (Mr. V.Tour, 러시아)  
 Group 3: (회원의) 권리와 의무 (Mr. Lucas, 영국)  
 Group 4: 작업방법 (Mr. G. Fishman, 미국)  
 Group 5: 기대되는 개혁이 전기통신 일반의 발전과 특히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Ms. L. Shope-Mafole, 남아프리카공화국)  
 Group 6: 구조개편 및 관련되는 헌장, 협약의 개정 (Mr. A. Berrada, 모로코, 본 Working Group 의장)



- ITU내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할당을 바탕으로 원가에 입각한 각 Sector 및 사무총장 산하 사무국의 예산편성
- 작업방법론 개혁
  - 권고 승인절차 간소화
    - 규제, 정책 관련 사항을 제외한 권고는 연구반회의에서 최종승인
- 재정운영
  - 차제 비용복구 시스템의 전면적인 도입
  - 회원들의 기부금 등급 결정과 관련한 지침 마련 여부
  - 기부금 등급 조정 및 공표시점 관련
    - 전권위원회 기간 중 자국(또는 자사)의 기부금 등급 공표
    - 기부금 등급 조정은 한번에 2 unit을 넘지 않도록 함
  - 기부금 체납국에 대한 제재조치 등
- 조직구조 개편
  - 기존 ITU-T, ITU-R의 전면 재조정
    - 기술권고 개발활동 일원화 : Sector A
    - 무선규칙, 요금제도 등 연구 및 규칙/권고 제정활동 : Sector B

한편, ITU-2000 그룹의 활동(및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주체들의 입장은 크게 4그룹으로 대별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 1군(개혁선도 그룹)
  - BT, FT 등 서유럽과 캐나다의 주요 통신사업자 및 이들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적극 지지하는 해당국 정부
  - 사안에 따라 일부 차이 또는 예외는 있으나 앞서 나열한 핵심사항 전반에 대해 개혁적

- 인 입장 견지
- 2군(기존 게임방식 유지희망 그룹)
  - 미국 정부
  -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게임방식(ITU 운영방식)에서 자국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개혁에 소극적
  - 민간회원의 권한강화, 작업방법론 개혁, 조직개편 등에 적극적인 반대입장 개진. 예산 시스템 개혁에도 반대입장 표명.
- 3군(개혁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그룹)
  - 시리아, 중국 등 일부 개도국 정부가 주도, 대다수의 개도국이 대체적으로 동조
  - 민간 중심의 통신사업이 성숙되지 않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도 약한 상황에서 개혁안 실행이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정부의 조정기능 상실에 대해 우려
  - 더불어, Sector별 독립채산제(?) 채택이 개발 Sector의 지원약화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4군(중도그룹)
  - 일본 정부 등
  - 개혁안의 취지에는 적극 찬동하지만 정부의 영향력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 일반적으로 대세를 존중하는 입장 견지

이처럼 각자의 입장과 이해가 차이를 보임으로써 ITU-2000그룹의 개혁안 마련은 좀처럼 쉽게 진전 및 합의를 보이지 못하고, 특히 2차회의 기간에는 종전의 작업결과에서 후퇴하는 등 지리멸렬한 진행을 보였으나 작업의 공전에 대한 주위의 비난과 최종 작업완료 기한에 직면함



로써 3차회의에서 주요 부분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 어렵게 최종 권고안에 합의하게 되었다<sup>3)</sup>.

## II. 최종 권고안 주요 내용

ITU-2000 그룹이 4월 21일에서 25일까지 개최된 3차회의에서 합의를 도출, 6월 이사회에 제출한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 ○ Sector Member(민간회원)의 단일화<sup>5)</sup> (R.4)

(참고: 괄호안 내용은 최종 권고안 번호임)

- 민간회원의 단일화 및 보다 많은 기관에 폭넓게 문호 개방
- 모든 회원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 보유

○ Sector Member로의 가입신청에 신규 절차 추가 허용<sup>6)</sup> (R.5)

- 각국 정부(Member State)는 자국내 기관이 ITU Sector에 member로 가입 신청시 ITU 사무총장에 바로 신청토록 허용할 수 있음 (기존절차는 사전에 정부가 승인 및 ITU 사무총장에 제출)

### ○ 기존 member외에 'Associate' 도입 (R.6)

- 연구반 작업 참여는 가능하나 의사결정 권한은 없음
- 소규모 기관의 ITU Sector 활동 (특히 ITU-T, R의 권고개발 활동) 참가를 가능케 하고 이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음

### ○ ITU 예산시스템 개혁<sup>7)</sup> (R.9)

: ITU의 재정기반 강화 및 회원(특히 Sector

3) 최종회의인 3차회의에서 개혁권고안 마련작업이 진전을 이룬 것은 개혁안 주요부분 곳곳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었던 미국 정부와 시리아, 모로코 정부 등이 2차회의 공전 후 자국에 집중되는 작업 공전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의식, 3차회의에서 기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동시에 3차회의에 앞선 국내 대책회의에서 AT&T 등 민간통신사업자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자국 정부의 입장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본문에서 소개되지 않은 권고안들은 아래와 같다. 한편, 권고안 원문은 ITU-2000 3차회의 결과(DOC 70-E, '97. 5. 20일자)를, 의장 보고서는 Dec71-E('97. 6. 2, 이사회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R.1, R.2, R.3: 일반사항. ITU의 성격, 회원간 협력, 회원명칭, 역할 등 규정. (정부회원: Member State, 민간회원: Sector Member)
- R.7: 외부 관련기관과의 협력 추진
- R.8: 총회 명칭 변경 (WTSC→ WTA, World Telecommunication Assembly)
- R.12: 간행물 가격 정책
- R.1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지침서 마련 및 배포
- R.16: 프로젝트팀 작업방법론 도입 및 재정 총당
- R.19: ITU 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 외주 허용
- R.21: 수입 창출활동 모색
- R.26: WRC 개최간격의 탄력적 검토 (충분한 준비기간 허용)

한편, 조직구조 개편은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정부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권고안에서 제외되었다.

5) Sector Member의 단일화시 현재 공인 전기통신사업자(ROA)가 가지는 권한을 모든 Sector Member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 되었다.

- 정부승인시 WRC에 observer자격으로 참가 (현행 ITU협약 280조),
- 정부에서 ITU통보시 ITU활동에서 정부 대표역할 수행 (협약 239조) 등

6) 다수 개도국 정부와 일부 선진국 정부로부터 신규절차 추가에 우려 표명이 있었다.

7) 기부금 선택 관련 voluntary principle의 필요성 및 ITU 재정의 균등 분담시 기준/고려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후자 관련, Sector Member들은 적절한 기준 마련시 각자가 누리는 혜택 뿐 아니라 Sector Member들이 제공하고 있는 ITU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음) 아울러, Sector Member 기부금의 해당 Sector로의 직접할당과 관련, Member State가 내는 기부금의 Sector 할당 방법, Sector Member 기부금이 Sector 예산소요보다 부족할 경우의 처리방법 등 적용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



Member)들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현재의 예산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 1) 기부금 등급의 '자유선택' 원칙은 기존대로 유지<sup>8)</sup>
- 2) ITU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비용할당(cost allocation) 시스템 조기 실현
- 3) Bottom-up 방식의 Sector 및 ITU 전체예산 편성 조기 실행<sup>9)</sup>
- 4) Sector회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Sector로 직접 할당<sup>10)</sup>
- 5) 이사회는 '98~'99 예산안 검토시 상기사향고려 및 차기 회계기간(2000~2001)에는 이를 전면 이행

- Sector별 자문그룹(advisory body)의 권한 강화
  - 각 Sector 국장은 Sector 재정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부여방안 조기 검토
  - 이사회는 Sector Member의 재정문제에 대한 의견이 고려되도록 조속한 장치 마련 (이상 R.11)
  - TSAG(ITU-T), RAG(ITU-R)의 위치 및 역할을 현장에 명시토록 조항 마련. TDAB(ITU-D)도 Sector Member에 개방을 위한

조치 시행(R.24)

- 각 Sector의 총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실행권한을 자문그룹에 위임할 수 있음(Sector별 작업우선순위, 작업방법, 예산, 외부 기관과의 협력 등) (R.25)

- 기부금 채납국가에 대한 제재조치 (R.13)
  - 기부금 채납국가의 경우 이사회나 총회 관리기구의 위원선출시 제외
  - 채납금 특별계정의 폐지
- Sector회원의 WRC(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참가허용 (R.15)
  - '97년 10월 ITU Radio Assembly에서 검토 후 차기 이사회에 제안서 제출
- 권고 승인과정에 신규절차 추가도입<sup>11)</sup> (R.17)
  - Sector Member는 기존의 작업방법 및 절차를 확대, 별도의 권고 승인 절차를 통해 일부 권고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승인절차를 적용토록 함
  - 별도 절차에 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음
    - 연구반회의에서 연구과제 채택시 추후 권고개발 완료시 승인절차 결정(별도 절차에 의해 승인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위 결정사항에 대해 Member State와

8) '자유선택'시스템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ITU 활동에 대한 재정부담을 member들이 보다 균등하게 분담토록 보완이 필요함을 주석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회원들이 각자의 기부금 등급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기부금 수준에 대한 정보와 이와 관련한 사무총장의 조치내용에 대해 주기적으로 배포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9) Sector별 활동과 ITU 전체차원의 활동(서비스 및 제품 제공에 초점)에 ITU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분할, 할당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및 제품 제공의 원가에 비탕하여 Sector 및 ITU 전체예산을 편성함을 의미한다. 각 Sector는 자체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 외에 사무총장 산하 사무국에 야기시키는 일반관리 및 공통비용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시 포함시키게 된다.

10) 항목이 명확히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위 2)의 일반관리 및 공통비용을 포함한 일정액은 Sector활동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사무총장 산하 사무국의 비용을 분담하는데 할애된다.

11) '97.3월 개최된 ITU-R 자문반회의에서 ITU-2000 2차회의의 결과에 대한 검토시 ITU-R에서는 신규절차를 일단 채택않기로 결정한 바 '97 Radio Assembly에서의 수용여부가 불확실하다.



Sector Member에 검토 요청

- 별도절차에 따르도록 결정된 권고는 연구 반회의 승인으로 최종 채택됨
- 정책, 규제성격의 권고는 별도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사무총장과 Sector별 국장은 이사회, Member State, Sector Member에 ITU의 서비스 및 제품 개발/실행과 관련한 생산성 지표 제공 (R.18)

- 이사회는 이를 검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시행
- 지표가 담는 내용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Sector별 자문반에서 함께 검토

○ ITU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자체 비용복구 적용<sup>12)</sup> (R.20)

- 이사회는 기존의 서비스,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자체 비용복구 적용을 시행하는 외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추가기회를 발굴토록 함

○ 기부금 등급 결정 및 하향조정<sup>13)</sup>

- 기부금 등급 결정을 전권위원회 기간중 공표토록 함(R.22)
- 기부금 등급을 하향조정코자 할때 한번에 2 unit로 상한선 설정(R.23)
- 현행 정부회원, 민간회원 사이의 1unit당 기

부금 액수의 현행 1:1/5비율에 대해서는 향후 ITU의 재무구조와 연계하여 재검토 (R.10)

○ ITU-D의 역할 및 Regional Presence(R.27)

- 지역내, 지역간 전기통신 협력 구심체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조치강구
- 지역내 전기통신기관에 대해 ITU의 각종 기술, 개발, 정책영역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창구역할 강화

### III. 이사회 검토 결과

금번 이사회에서는 작업결과, 권고안 주요 요지, 향후 조치필요 사항 등을 소개한 의장 보고서 발표에 이어 권고안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ITU-2000 그룹작업이 회원들의 폭넓은 참여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원칙선에서 권고안을 승인하자고 주장한 반면,<sup>14)</sup> 다수 개도국들이 자금, 인력 등 자국 내부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ITU-2000그룹 작업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최종 권고안 내용에 대해서도 번역본(불어, 스페인어판)의 배부시점이 늦어 권고안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향후 시간을 두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 한때 난관을 겪었다. 특

12) 위성제도/주파수 할당과 관련하여 ITU내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지의 결정이 향후 주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3) 기부금 등급 결정이 과거 전권위원회에서 ITU 예산 편성후 6개월 이내에 차기 ITU 예산규모나 자국의 ITU 주요 위원회 진출 등을 고려,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온 점을 고려할때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민간회원들의 경우 최근 기업 주변환경의 급변을 고려할 때 4년동안 일정액의 기부금액을 사전 약속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2년 단위로 조정을 희망하였다.

14) 일단 최종회의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이사회에서 권고안의 수정없는 승인과 실행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히 개도국의 경우 각국의 주권 존중, ITU의 전체성 유지<sup>15)</sup>, Sector간 균형발전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여건 및 정부의 입장이 보다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선진국 입장 요약 (북미, 서유럽 국가, 일본 등)

- ITU-2000 Working Group 작업을 통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타협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 개별적으로 다시 논의시 전체성 훼손됨
- 일부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시작 단계로서 조속한 실행을 위한 조치 마련 중요
- 권고안에 대한 수정은 전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도국 입장 요약 (아프리카, 중남미, 아랍, 동남아국가 등)

- 개도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ITU-2000 그룹작업에 소수만이 참여한 만큼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 사안에 따라 추가 검토 필요 (민간회원 가입절차, 재정운용 및 예산제도, 분담금 납입지체에 대한 제재 등
- ITU의 개혁안은 특정 민간 Sector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개도국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안이 되어야 함
- Sector Member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한편

Member State의 주권문제도 존중되어야 함  
· 민간회원의 ITU 참가신청 절차의 이원화는 정부의 주권에 대한 침해임 (중국 등 강력히 반대)

- Sector Member의 권리를 증대시키는 만큼 이들의 재정부담도 증대되어야 함
  - 현행 기부금 unit 금액에 있어 정부와 민간간의 1:1/5 비율에 대한 재검토 등
- 재정운용 개혁과 관련, ITU의 전체성과 Sector간 균형적 발전고려 중요
  - Sector Member의 기부금은 해당 Sector로 직접 할당 반대
- Development Sector에 대한 강화방안 미흡, 구체적 지원방안 필요
- 분담금 지체에 대한 처벌적 제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각국의 사정을 이해하여 도와 줄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현행 전권위원회 이후 기부금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에 반대함

한편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크게 평행선을 그리며,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결국 ITU-2000 그룹 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참가국들간에 큰 이견이 없고 이사회의 결정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헌장, 협약의 개정안을 추후

15) 세네갈 대표 등이 ITU가 회원가입절차에 2가지 rule을 적용하고, Sector별 독립채산제(?)를 채택할 경우 ITU의 전체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을 개진. 많은 개도국 대표들로 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

16) 한국정부의 입장표명은 다음과 같다.

- 권고안 및 이에 반영된 정신에 대해 지지, 조속한 실행 희망
- 정부회원-민간회원간 조화로운 관계정립의 중요성 강조 및 정부회원에 추가부담을 주지않는 가운데 지속적인 재정기반 강화노력 필요



마련, 이와 함께 '98 전권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전권위원회에서 검토기로 결정하였다<sup>17)</sup>.

○ 이사회 승인 권고안

- R.7 : 관련 외부기관과의 협력 추진 (Sector 별로 시행)
- R.9 : (부분 승인)
  - ITU내 모든 활동에 대한 비용할당 시스템 및 비용지출 추적이 용이한 투명한 회계시스템의 실행 (R.9/2)
  - R.9/2에 바탕한 bottom-up 방식의 Sector, 사무국 및 ITU 전체예산 편성 (R.9/3)
- R.11 : (부분 승인)
  - Sector 자문그룹으로 하여금 Sector 재정 문제에 대해 자문토록 조치 (R.11/1)
- R.14: (부분 승인)
  - Sector 멤버 매뉴얼 작성, 활용 (R.14/2)
  - ITU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안내서 작성, 활용 (R.14/3)
- R.16: 단기 전략적 대응을 위한 project팀 작업방법론 도입 및 이를 위한 별도의 유연한 방식에 의한 재정충당 허용
- R.18: 생산성 지표 도입
- R.19: ITU 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 outsourcing 허용
- R.21: 수입창출 활동 모색(검토 후 전권위원회에 제안)
- R.22: 자국(자사) 기부금 등급에 대해 전권

위원회 기간 중 공표, 전권위원회에서 검토 토록 결의안 제출

- R.25: 각 Sector의 총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실행권한을 자문그룹에 위임
- R.27: ITU 개발부문 활성화

■ 기타 권고안

- R.1, R.2, R.3, R.4, R.5, R.6, R.7, R.8, R.9/4, R.10, R.11(second part), R.12, R.13, R.14, R.15, R.17, R.20, R.22, R.23, R.24, R.26
- 헌장/협약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국가간 이견으로 인해 이사회에서 승인이 어려운 부분으로 ITU-2000사무국에서 ITU 및 각국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헌장/협약 개정안을 마련 후 이를 첨부, 전권위원회에 상정키로 함
- R.5와 R.13 내용은 이사회 의장이 재작성기로 함

IV. 향후 전망 및 일정계획

ITU-2000 그룹 작업과정과 금번 이사회 검토 과정에서 보았듯이 ITU의 개혁권고안을 놓고 ITU회원들간에 상당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있어 '98 전권위원회에서 ITU-2000 그룹의 권고안이 어느 정도 채택, 실행될지는 현 단계에서 예측이 힘들다. 단, ITU-2000 그룹 작업과정에서 선진국 진영의 의견이 타협을 통해 일단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98 전권위원회에서 ITU-2000 권고안

17) 다음 특정권고에 대해서는 추가로 Footnote를 추가기로 결정하였다.

- 인간의 ITU회원 가입 절차 개선에 대한 권고안(R.5)에 대해 일부 국가로부터 정부의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명시
- 분담금 지체에 대한 제재방안 권고안(R.13)에 대해 일부 국가로부터 ITU의 전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을 명시



의 채택여부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개혁권고안의 실행시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고 동시에 이들의 보다 절실하고 현실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금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ITU-2000 권고안의 주요 부분들은 권고안의 실행에 수반되어야 할 현행 헌장/협약의 개정안과 함께 '98 전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따

라서 ITU-2000 사무국에서 주요 회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헌장/협약을 마련하게 되면(금년말 이전 완료 예정), 각국에 배포되어 이를 바탕으로 각국이 전권위원회에 대비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이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개혁 권고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98 전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TTA